

##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청구서 및 청구서류[병원서류 등]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용 ☞당사에 정상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일부 항목만 수령 원하시는 경우 별도 기재 바랍니다. ☞이하 항목들을 상세히 체크·기재시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재해(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기타( 박새 워이 □사망 □장해 □진단 □입원 □수술 □통원 □실손의료비 □기타( 청구 사유 ※상기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중 일부만 청구하려는 경우 그 취지 및 청구하려는 보험금 등을 명시하여 기재 일 ( 시 분) 사고내용 사고(발병)일시 녀 사고장소(초진병원) ※육하원칙 작성 (예, 금일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 받기위해 내원, 한달 전 건강검진 후 대장에 이상 있어 방문) 사고(발병)경위 병 명 [병명코드: 〕 ※실손 수납액 합계 10만원 이상건 병명확인서류 첨부 필수 실손의료비 타사가입내역 실손 가입유무 (□Y  $\square N$  ) 보험회사 청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유무 (□Y  $\square N$ ) ※의료수급권자는 실손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본인 내방 시에만 신청가능(생존 확인 필요시 신청불가) 하단의 수익자 본인계좌로 자동송금 신청합니다 사고연금 □ 정기수령 (발생일에 자동 지급 / 단, 확정 지급 발생건에 한함) 신청시만 작성 수 익 자 (서명) □ 일 시 금 (약관기준에 의해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 지급)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정보 성 명 주민버호 여 라 처 현재직업 보험수익자(보험수령자)정보 주민번호 연 락 처 자 택 핸드폰 □증번별 자동이체 계좌로 송금요청 (단, 수익자와 예금주가 동일인인 경우만 해당) 송금계좌 은 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내역(지연) 안내방법 □신청하지 않음 □FAX( ) □F-mail ( (a) ) □문자 □우편 ※위 안내방법 미선택시에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문자로 발송됩니다. 안내 방법 선택 ※우편 발송시 당사에 등록된 보험수령자의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 수령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보험금 접수 및 지급 등에 대한 SMS 안내 또는 알림톡은 지급내역 안내방법과 관계없이 자동 발송됩니다. 보험금 접수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 [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3항, 제4항등 법령에의한 안내사항]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별도로 고객님에게 안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해당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보험금 심사/조사 등 업무 중 일부는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정요건 (보험금지급절차안내문 '손해사정사 선임시 비용주체' 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

- 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 \*담당자(연락처)확인 진행사항 문의:고객콜센터 1588-4770 / 보험금 담당부서: 보험심사부
- "보험사기 (허위입원,고의사고,사고조작,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처그지저ㅂ

J	성무사성도												
	〈보험금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 안내방법,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내용 확인 후 청구자 성명란에 자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성 명</b> (인)		관계		주민번호	-		연 락 처	_	_			
						20	년	월	일				
	접수병	<b>&gt;방법</b> □내방 □우편 □FAX □홈페이지 □FC대리전		접수(FC명: )									
	<b>저 스 자</b>			(이) 여급	마체 ( _	_	) 과리자:		(01)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3층 310호 iM라이프 보험금 접수센터(우편번호: 07261)

※FAX (0505-083-5420), 홈페이지, 모바일 (iM라이프모바일창구 앱) 접수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함

※접수문의: 콜센타 (1588-4770)



#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iM라이프생명보험 귀중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ul> <li>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li> <li>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및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li> <li>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li> <li>자동차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li> </ul>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보유 및 이용기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 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 "을 말한다.

###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포기가구 말장도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의	취득한 정보 을 받아 취득한
	위 <u>민감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
일반개인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 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성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
신용거래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ul> <li>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수사 또는 사법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li> <li>종합신용정보집증기관 : 한국신용정보원</li> <li>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국내 재보험사,공제사업자,체신관서(우체국보험)</li> <li>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li> <li>계약관계자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li> <li>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li> <li>업무수탁자 등 : 손해사정업체, 위탁콜센터, 의료기관, 우편물발송대행업체, 법무법인(변호사) 등</li> <li>의료기관 등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등</li> </ul>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ul> <li>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li> <li>중합신용정보집증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교통사고처리내역발급간소화서비스</li> <li>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금 청구</li> <li>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li> <li>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li> <li>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li> <li>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 의료심사 및 자문, 법률자문 및 소송 등</li> <li>의료기관 등 :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등</li> </ul>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외국 소재 본점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프미크린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조사 (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 (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도	위득한 정보 을 받아 취득형	<u>ት</u>
	위 <u>민감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수익자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일반개인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간,
신용거래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imlifeins.co.kr]에서 확인 가능)



#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생명·손해보험협회					
조회 목적	<ul> <li>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교통사고 처리내역 발급 간소화 서비스</li> <li>보험요율산출기관, 국토교통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li> <li>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li> </ul>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프 프게 그 글 8 프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교통법규 위반정보, 교통사고조사기록(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위 <u>민감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 지급금액 등)	보(보험금 지급사유,					
신용거래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20 년 월 일

피보험자:	(인)	법정대리인 1 :	(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수 익 자:	(인)	법정대리인 2 :	(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협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바랍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피보험자란에 작성바랍니다.)



# 개인고객 거래 확인서

고객확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관리됩니다. 고객확인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 기재란)										
고객 정보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국적	※ 외국인민	<u></u> 작성		
구분	□ 개인 □	사업자 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만 작성								
	□ 관세사 □ 판사 □ 검사 □ 법무사 □ 변리사 □ 의 사 □ 변호사 □ 회계사/세무사 □ 공인노무사 □ 감정평가사 □ 보석감정사 □ 미술품감정사 □ 부동산감정사 □기타감정사									
	□ 카지노/성인오락실 □ 환전상 □ 귀금속/보석상 □ 대부업자 □ 무기제조업자/무기판매상								상	
직업(업종)	□ 5급이상 고위	공무원 □ 정당	당고위임원		기 공무원					
	□ 보험설계사(등	당사) 🗆 보험설	[계사(타사)	□ 금융	자산 운용가	□ 기타 호	리계 및 금융	당, 보험 관련	전문직	종사자
	□ 급여소득자	□ 연금소득	두자 [	□ 남자무직	l(55세 이하)		. 외 일반 7	H인 [	] 미성년	크자
	※ 개인사업자는 입	<b>설종기재</b>								
자택주소	※ 직장주소와 택1	가능			연락처		※ 직장연락처와 택1 가능			
직장주소	※ 자택주소와 택1	택1 가능			연락처		※ 자택연락처와 택1 가능			
신원확인증	□ 주민등록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 발급일자 · 일련번호		월	일	
	□ 운전면허증	· 면허번호 :		-	□ 기타					
실제소유자	□예 □아	□ 예 □ 아니오 ("아니오"인 경우 대상자 기재필) ※ 실제소유자를 "아니오"로 답한 경우 실명증표 제출 ※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성명	※ 실소유자가 "아	니오"시 기재 주민	!등록번호	※ 실소유자	가 "아니오"시 기	재	국적 ※	실소유자가 "	아니오"시	시기재
	_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금융의				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 직접 기재 )			
거래자금 원	천 및 출처 ├─	재산양도소득 □ 연금소득 □ 기타			□ 기타소	)				
<b>거래</b> 목적 (제지:		] 사업자금 □ ] 사고보험금 수령	생활(가계)지 □ 기E	. –	<sup>브채상환</sup> 직접 기자		·구매/임차 )			
회사 작성란	※확인자는 [특정 이행하였음을 확	정거래정보의 보고 인합니다.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	률] 및 관련규정	정 등에 의	거하여 상기	기 고객확인 당	빛 검증을	을 성실히
점검사항	고객정보 기재	여부, 고객거라	확인서와	전산입력	정보 간 일치	여부 , 신	분증 진위	여부 확인	С	
작성일자		지점	덬명(부서)			획	·인자			(인)
※ 확인자 : 고객	 거래확인서 점검시	ト항을 확인 및 검증	등 후 전산 입	력자의 서	명 필수 기재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



####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처리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상적인 보험금 접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0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FAX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SMS를 통해 접수사실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Tel: 1588-47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보험금 관련 고객문의/안내 (유선, 내방)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전달 (내방,우편,FAX) ► 청구서류 접수 (내방,우편 등) ► 보험금 심사 및 현장심사 ► 및 현장심사 ► 및 처리 ► 발송(고객요청)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 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콜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 ■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분담 적용)

● 의료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상법 662조, 2015.03.12 개정시행)

#### ■ 보험금 지급 및 부지급 안내,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서 상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그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당사 홈페이지(www.imlifeins.co.kr) 및 콜센타(T.1588-4770)를 통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지연 및 가지급제도 안내

- 보험금 처리가 지연된 경우, 지연안내장이 발송되며 해당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 또는 의료심사 등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재심사 청구

●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콜센터(Tel: 1588-4770)를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

●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